

●국토교통부령 제1207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5월 03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3조제3호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”를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건설기계대여업체(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,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,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)

원도급 업체명	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	건설기계대여업체		건설기계 대여내용		
	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⑯건설기계명	⑰대여기간	⑱대여금액
	[]사용 []미사용(□사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	[]사용 []미사용(□사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
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건설기계대여업체(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,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,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)

하도급 업체명	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	건설기계대여업체		건설기계 대여내용		
	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⑯건설기계명	⑰대여기간	⑱대여금액
	[]사용 []미사용(□사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	[]사용 []미사용(□사간당 대여 □기타)					원

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직접시공계획란 중 “⑧하도급(예정) 금액 합계”를 “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”로 하고,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중 “노무비”를 “노무비 포함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4호 중 “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⑦)와 하도급(예정)금액의 합계(⑧)”를 “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직접시공 노무비)와 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”로, “총 노무비(⑤)”를 “⑤총 노무비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중 “법인(주민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”로 하고, “주소”를 “영

업장 소재지” 로 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 중 “법인(주민)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” 로, “주소” 를 “영업장 소재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